

#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이리동초등학교

## I. 배경 및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[신설2022.12.27.]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[신설2023.6.27.]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[시행2023.9.1.]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 요구

## II. 운영 방법

- ①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‘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’을 수립
- ② 학교장 내부결재 후, 교육 3주체(교원·학생·학부모)에게 공표하고 시행
  - ※ 교직원 공람, 학교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

## III. 운영 기간

-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

교육부고시 제2023-28호

###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

: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**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**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IV. 운영 내용

- [제12조제6항] ---<생략> 다만, 제3호(수업중 교실밖 분리) 및 제4호(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)에 따른 분리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**세부사항은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,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**
- [제12조 제6항의 제1호, 2호, 3호, 제4호에 의거한 규정] 학생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
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	수업 중 자리 이탈, 잡담,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(학생 본인 준비)	
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	교실 내 지정된 위치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 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)	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	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	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
	나	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, 교장실,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 등에 학생 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	수업시간에 지각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쉬는시간, 점심시간 내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
	나	① 1호~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학교폭력, 교육활동 침해, 교권침해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, 교장실,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
기타	<p>※ 교육부고시 제12조제7항( 보호자 인계 ) :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,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.</p>				

\*지각·결과, 정당한 사유없이 1교시 수업 시작(9:00)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거나 (지각), 수업 시간 중 일부를 참여하지 않는 것(결과)

- [제12조 제9항]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고 **세부사항은 한시적인 특례 운영 후,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한다.**
- [제12조 제9항에 의거한 학칙 규정]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<b>사용 제한 물품</b>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(예시) 핸드폰 등 정보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,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 등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회차 : 주의 실시</li> <li>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</li> <li>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</li> <li>· 수업 종료 후 또는 하교 시 : 되돌려줌</li> </ul>
2	<b>소지 금지 물품</b>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성냥, 레이저빔 기기 등	3일	교무실 (학교장이 정하는 장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</li> <li>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</li> <li>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</li> <li>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일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(학생반환 불가)</li> <li>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</li> </ul>
3	<b>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</b> (예시) 술, 담배 등			
4	<b>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</b> (예시) 음란미디어, 도색잡지, 도박 관련 물품 등			
기타		※ 교육부고시 제11조제2항( 핸드폰 사용 ) :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		

## V. 향후 계획

- 9월 예정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고시 해설서가 안내된 후, 학칙 정비 예정
-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 예정
-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 완료 예정

## VI. 첨부

-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. 끝.